

변 경 대 비 표

■ 펀드명 : 하나코스닥벤처기업&공모주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■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6 년 01 월 01 일

■ 변경사유

- 조세특례제한법,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
- 투자자문회사 계약해지에 따른 삭제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- 투자전략	투자자문회사 계약해지에 따른 삭제	(1)주식에의투자 - 하나증권 리서치와 연계해 코스닥, 코넥스 관련 종목 리서치를 시행, 선별 투자	(1)주식에의투자 - 코스닥, 코넥스 관련 종목에 대한 리서치를 시행, 선별 투자
요약정보- 과세	조세특례제한 법 변경 사항 반영	세제혜택: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 년 12 월 31 일 까지 투자(투자신탁 수익 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액(해당 투 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합계액을 말함)에 대해 투 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(거주 자 1 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 만 원)	세제혜택: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 년 12 월 31 일 까지 투자(투자신탁 수익 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액(해당 투 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합계액을 말함)에 대해 투 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(거주 자 1 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 만 원)

■ 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9. 가. 1) 주식에의 투자	투자자문회사 계약해지에 따른 삭제	- 하나증권 리서치와 연계해 코스닥, 코넥스 관련 종목 리서치를 시행, 선별 투자	- 코스닥, 코넥스 관련 종목에 대한 리서치를 시행, 선별 투자
9. 라. 투자자문	투자자문회사 계약해지에	*투자자문업자 : 하나증권 [투자자문 내용]	해당사항없음

	다른 삭제	- 중장기 전망 예측에 근거한 투자대상 종목군 추천 및 IPO 물량에 대한 투자 자문 제공 - 관련 시장에 대한 시황, 경제전망 및 투자대상 종목군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 - 투자신탁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 제공 ※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자문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서 지급됩니다. ※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,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(25.12.04)	나. 특수 위험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혜택 미적용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'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'벤처기업투자신탁'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의 25%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이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	나. 특수 위험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혜택 미적용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'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'벤처기업투자신탁'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의 30%(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)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이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14. 이익 배분	조세특례제한	나. 과세	나. 과세

및 과세에 관한 사항	법 개정 사항 반영	2)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관한 사항 세제혜택: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(투 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액(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 함)에 대해 투자금액의 10%를 투 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 득공제(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 도는 300만원)	2)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관한 사항 세제혜택: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(투 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액(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 함)에 대해 투자금액의 10%를 투 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 득공제(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 도는 300만원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	
2. 가. 집합투자재산 의 운용(지시)업 무 수탁회사	투자자문회사 계약해지에 따른 삭제	-투자자문서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사 : 하나증권	해당사항없음